

#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

(김영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59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9. 26.

발의자 : 김영진 · 김영호 · 백혜련  
서영교 · 소병훈 · 이원욱  
인재근 · 전혜숙 · 한정애  
황희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

강력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자치분권 추진체계인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하고, 자치분권위원회에 일반국민과 지역단체의 참여를 강화하며, 자치분권위원회의 추진상황 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반영 등 자치분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, 자치분권 등의 정책에 관한 관계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분권 등에 관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가. 자치분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)

- 1) 자치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두도록 함.
- 2) 읍면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,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견 수렴 활성화 관련 사항,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분권 등에 관하여 제출한 사항을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으로 함.
- 3) 교육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장을 자치분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.

나. 자치분권위원회의 일반국민 등의 참여 환경 조성(안 제46조의2 신설)

- 1) 자치분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함.
- 2)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, 정책제안,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.

다. 정부업무평가 반영(안 제49조제4항 신설)

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 실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의 처리결과 등의 사항을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함.

##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

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명 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”을 “지방자치분권 특별법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분권”을 “자치분권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지방분권””을 ““자치분권””으로 하고, “하는”을 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 하는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지방분권”을 각각 “자치분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방분권정책”을 “자치분권정책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지방분권”을 “자치분권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수립)”을 “(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립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지방자치발전”을 각각 “자치분권”으로, “지방분권”을 “자치분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방자치발전”을 “자치분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중 “지방분권”을 각각 “자치분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지방자치발전”을 각각 “자치분권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지방자치발전”을 각각 “자치분권”으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지방분권”을 “자치분권”으로 한다.

제2장제1절의 제목 “지방분권의 기본원칙”을 “자치분권의 기본원칙”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지방분권의 기본이념)”을 “(자치분권의 기본이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지방분권”을 “자치분권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지방분권”을 “자치분권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지방분권정책의 시범실시)”를 “(자치분권정책의 시범실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지방분권정책”을 “자치분권정책”으로 한다.

제2장제2절의 제목 “지방분권의 추진과제”를 “자치분권의 추진과제”로 한다.

제44조의 제목 “(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)”를 “(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지방분권”을 “자치분권”으로, “지방자치발전위원회”를 “자치분권위원회”로 한다.

제45조제1호 중 “지방자치발전”을 “자치분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읍 · 면 · 동”을 “읍 · 면 · 동의 주민자치 기반 강화,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견 수렴 활성화, 읍 · 면 · 동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“지방분권”을 “자치분권”으로 한다.

8의2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

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항

제46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8항) 중 “분과위원회”를 “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”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1. 교육부장관
2. 문화체육관광부장관
3. 농림축산식품부장관
4. 보건복지부장관
5. 국토교통부장관
6. 법제처장
7.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

⑧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·검토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6조의2(일반국민 등의 참여) ① 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, 정책제안,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47조의 제목 “(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무기구)”를 “(자치분권위원회의 사무기구)”로 한다.

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7조의2(자치분권 지원단)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원단을 둘 수 있다.

제48조제1항 중 “지방분권”을 “자치분권”으로 한다.

제4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시 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1조 중 “지방자치발전”을 “자치분권”으로 한다.

제52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존속기간)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.

제3조(사무이관 등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승계한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사항은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것으로 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

<p>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<u>지방자치발전</u>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지방자치발전</u>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지방분권</u> 및 지방행정체제 개 편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 표</li> <li>2. · 3. (생략)</li> <li>4. 그 밖에 <u>지방분권</u> 및 지방 행 정체제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li> </ol> <p>③ <u>지방자치발전</u> 종합계획은 국 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미 수립 된 <u>지방자치발전</u> 종합계획을 변 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④ 위원회는 수립된 <u>지방자치발 전</u>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.</p> <p>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· 시행)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<u>지방자치발전</u> 종합계획을 시행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</p>	<p>----- ----- ----- <u>자치분권</u> ----- -----.</p> <p>② <u>자치분권</u> ----- ----- 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자치분권</u> ----- ----- -</li> <li>2. · 3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4. ----- <u>자치분권</u> ----- -----</li> </ol> <p>③ <u>자치분권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-- <u>자치분권</u>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<u>자치분권</u> - ----- -.</p> <p>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· 시행) ----- <u>자치분권</u> ----- -----</p>
---	---



<p><u>제10조(지방분권정책의 시범실시)</u></p> <p>국가는 <u>지방분권정책</u>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·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</p>	<p><u>제10조(자치분권정책의 시범실시)</u></p> <p>-- <u>자치분권정책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<u>제2절 지방분권의 추진과제</u></p>	<p><u>제2절 자치분권의 추진과제</u></p>
<p><u>제44조(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)</u> <u>지방분권</u> 및 <u>지방행정체제</u>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<u>지방자치발전위원회</u>를 둔다.</p>	<p><u>제44조(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)</u></p> <p><u>자치분권</u> ----- ----- ----- <u>자치분권위원회</u>----- --.</p>
<p>제4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</u>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~ 6. (생략)</li> <li>7. <u>읍·면·동의 주민자치기구</u>의 설치,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li> <li>8. (생략)</li> </ol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45조(기능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자치분권</u> ----- -----</li> <li>2. ~ 6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7. <u>읍·면·동의 주민자치 기반 강화</u>, <u>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견수렴 활성화</u>, <u>읍·면·동</u>-</li> <li>8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>8의2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행</p>

<p>9. 그 밖에 <u>지방분권</u>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</p> <p>제46조(위원회의 구성 · 운영) ① · 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③ ~ ⑥ (생략)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</u> <u>장이 제출한 사항</u></p> <p>9. ----- <u>자치분권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46조(위원회의 구성 · 운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교육부장관</u> <u>2. 문화체육관광부장관</u> <u>3. 농림축산식품부장관</u> <u>4. 보건복지부장관</u> <u>5. 국토교통부장관</u> <u>6. 법제처장</u></p> <p><u>7.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</u></p> <p><u>④ ~ ⑦ (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)</u></p> <p><u>⑧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 · 검토하기 위</u></p>
---	---

	<p><u>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<u>⑨ (현행 제7항과 같음)</u></p> <p><u>⑩ ----- 분과위원회-----</u>  <u>및 전문위원회-----</u>  <u>-----.</u></p>
<u>⑦ (생략)</u>	
<u>⑧ 위원회의 회의,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	
<u>&lt;신설&gt;</u>	<u>제46조의2(일반국민 등의 참여)</u>
	<p><u>① 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, 정책제안,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
<u>제47조(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무기구) ①·② (생략)</u>	<u>제47조(자치분권위원회의 사무기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u>
<u>&lt;신설&gt;</u>	<u>제47조의2(자치분권 지원단)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원단을 둘 수 있다.</u>
<u>제48조(추진상황의 보고 등) ① 위원회는 제45조에 따라 심의·의결한 사항과 지방분권 및 지방</u>	<u>제48조(추진상황의 보고 등) ① -----</u> <u>-----자치분권-----</u>

<p>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 <p>제49조(이행상황의 점검 · 평가 등) ① ~ ③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51조(국회의 입법조치) 국회는 종전의 「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라 제출된 기본계획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보고된 <u>지방자치발전</u> 종합 계획을 토대로 관계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되,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</p> <p>제52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9조(이행상황의 점검 · 평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시 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51조(국회의 입법조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자치분권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---	--